

의안번호	제 24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08월 30일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08월 30일
발의자 : 김종필, 이동우, 김호경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조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하고,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근거 조례 명칭 변경
(안 제14조)
- 나.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, 제5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호에 따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” 를 “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호에 따라” 로, “기타” 를 “그 밖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각각 “제1호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부적합하다고” 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 로 한다.

제9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4조에 따라” 로,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1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

하여” 를 “제10조에 따라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게는” 으로 한다.
제14조 중 “때의 치료와 보상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의 치료·보
상의 규정을” 을 “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
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1조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“119시민수상구조대원(이하 ”수상구조대원“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<u>제1호의 규정에 의한</u>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 3. “여름철 물놀이장소(이하 ”물놀이장소“라 한다)”라 함은 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<u>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</u> 장소를 말한다. 4. “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”라 함은 <u>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지사, 시장·군수, <u>기타의 공공단체</u>를 말한다. 5. “수난구조요원”이라 함은 <u>제1호의 규정에 의한</u>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. 6. “수변안전요원”이라 함은 <u>제</u>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제1호에 따른</u> ----- -----. 3. ----- ----- -- 「수상레저 안전법」 제2조 <u>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</u>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---. 4. ----- -- <u>제3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 <u>그 밖</u>-----. 5. ----- <u>제1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6. ----- <u>제1</u>

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.

제5조(시설·장비)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·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~ 6. (생략)

제6조(임무)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

제7조(복제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 소방서장이 정한다.

제8조(지도감독) ①·② (생략)

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- 1.·2. (생략)
- 3.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

호에 따른 -----

-----.

제5조(시설·장비) -----
----- 제3조제2항에 따라 -----
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무) -----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그 밖의 -----

제7조(복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제8조(지도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의 -----

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9조(자격기준) 수상구조대원의
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수난구조요원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기타 수난구조능력을 갖
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
하는 자

2. 수변안전요원

가. ~ 라. (생략)

마. 기타 수변안전 활동능력
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
인정하는 자

제10조(모집·선발) ① 소방서장
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
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
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시
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
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
분하여 모집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교육훈련) ① 소방서장은
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·
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
임무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
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치료·보상) 수상구조대원

-- 적합하지 않다고 -----

제9조(자격기준) -----
-----.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그 밖에 -----

2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그 밖에 -----

제10조(모집·선발) ① -----

-- 제4조에 따라 -----
----- 제11
조에 따른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교육훈련) ① -----

제10조에 따라 모집·선발한 수
상구조대원에게는 -----

-----.

제14조(치료·보상) -----

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의 치료·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---- 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1조를 ----.

관계법령

□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21조(재해보상)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8.2.>

1. 요양보상: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
2. 장애보상: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

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재해보상과 법 제17조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의용소방대원은 재해보상금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.